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4나200345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4나200345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36189 판결

##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5. 2.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36189 판결

##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9. 2.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D에게,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위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E은 D을 상대로” 다음에 “E이 2014. 11. 25. D에게 2,000만 원을 월 이자 3%, 변제기 2015. 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를 추가한다.

### 2. 원고의 주장

E은 H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D은 2014. 11. 11.경 H의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면서 이 사건 입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E이 위 보증에 따라 D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의 법정상속분인 2/7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위 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 피고들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D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경료한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3.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피보전권리로 원고가 E이 D에 대하여 가지는 2014. 11. 11.경 약정에 기한 보증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E이 D에 대하여 가지는 2014. 11. 11.경 약정에 기한 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참조), 원고는 위 보증채권의 주채권인 E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바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위 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보전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하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판사 오영준, 판사 한규현

1)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보전권리를 대여금채권으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보증채권으로 변경하였다.